

○ **농림축산식품부공고(입법예고)제2024-480호(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)**

관보 제20861호(2024. 10. 29.) 에 게재된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-441호(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)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.

2024년 11월 15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관보내용	정정사항	비고
<p>3.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<p>3.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<p>입법예고 기간 변경</p>